제162회(임시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부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목 차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면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4면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6면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9면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10면
6. (가칭)중학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 11면
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 13면
8. 도시환경정비(신문로2구역제5지구) 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 14면
9. 세종로구역 도로변경결정 및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 16면
10. 구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서순보의원, 오금남의원) …… 18면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6. 6. 15.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년 6월 14일 · 김복동 의원 외 4인
나. 회부일자 : 2006년 6월 14일
다. 상정일자 : 제162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2006. 6. 15) 상정 · 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김 복 동 의원)

가. 개정이유

○ 지방의회의원에게 종전에 지급하던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아울러 동 법령에 의하여 구성된 종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결정하여 통보된 의정활동비 범위(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우리구 의원에게 지급할 기준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코자 함.

나. 주요골자

○ 개정내용이 많아 기존의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전부 개정함

○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종로구공무원 보수지급일에 별표2의 지급액을 지급하되,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안 제3조 ①내지③항)

○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함(부칙)

다.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32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

(보고자 : 전문위원 라 도 균)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